

# 세대공감 글쓰기 캠페인 사업협약서

삼성카드주식회사(이하‘기업’라고 한다)와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(이하‘재단’이라 한다)은 세대공감 글쓰기 캠페인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약정 한다.

- 사업명 : 세대공감 글쓰기 캠페인
- 기부금 : 一金구천만원整(₩90,000,000원)
- 입금방법 : 서울시50플러스재단 기부금 전용계좌  
우리은행 1006-101-466252 (예금주: 서울시50플러스재단)
- 사업기간: 2018.05.00 ~2018.12.31.

## 제 1 조 (협약의 목적)

본 협약의 목적은 ‘기업’과 ‘재단’이 진행하는 세대공감 글쓰기 캠페인 사업(이하‘사업’이라 한다) 운영과 관련한 활동을 상호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상호 역할과 책임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 2 조 (협약의 유효기간)

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(30) 영업일 전까지 ‘기업’이 ‘재단’에 대하여 사업의 연장여부의 의사를 표명하여야 하며 의사가 없을 시 ‘사업’을 종결하는 것으로 한다. 단, ‘기업’과 ‘재단’과의 협의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## 제 3 조 (핵심가치공유)

본 ‘사업’은 글쓰기를 통한 소통을 통해 세대 간 단절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중장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구한다.

## 제 4 조 (주요사업 내용 및 일정)

‘기업’과 ‘재단’은 본 ‘사업’의 주요 내용과 일정을 아래와 같이 협의하여 추진하며, 필요할 경우 ‘기업’과 ‘재단’이 별도로 지정하는 담당자들간의 협의를 거쳐 수정 보완할 수 있다.



\* 2018년 주요사업내용 및 일정

| 구분 | 내 용   | 2018년 사업일정 |
|----|---|------------|
| 1  | 천 개의 이야기, 천 개의 자서전<br>50+세대가 쓰는, 자녀가 쓰는 부모님 이야기         | 5~10월      |
| 2  | 엄마아빠 응원 편지 (자녀세대 X 50+세대)<br>은퇴와 독립(가사)을 앞둔 50+세대 응원 편지 | 7월~8월      |
| 3  | 자녀의 꿈 응원 편지 (부모세대 X 50+세대)<br>엄마가 딸에게 / 아빠가 아들에게        | 9월~10월     |
| 4  | 사업보고 (최종)   | 18년 12월    |

**제 5 조 (상호역할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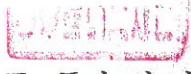
① ‘기업’의 역할

- ‘사업’수행을 위한 기부금액을 지원한다.
- ‘사업’의 안정적 홍보와 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.
- ‘사업’과 관련한 인생락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.

② ‘재단’의 역할

- ‘사업’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진행한다.
- ‘사업’의 안정적 홍보와 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.
- ‘사업’ 수행을 위한 기부금액 내의 예산집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.

**제 6 조 (예산 및 사용 내역 제공)**

- ‘재단’은 기부금을 1차 제 4조의 주요 사업 중 ‘천개의 이야기, 천개의 자서전’ 캠페인 론칭 시 50%, 2차 제 4조의 주요 사업 중 ‘엄마아빠 응원 편지’ 캠페인 론칭 시 50%로 분할하여 ‘기업’에 요청하고 ‘기업’은 각 요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‘재단’의 지정된 계좌로 ‘기부금’을 입금하며 ‘재단’은 기부영수증을 발급한다.  

- ‘재단’은 기부금 집행과 관련한 영수증, 통장 및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고, ‘기업’이 ‘사업’ 운영과 관련하여 확인을 요청할 경우 ‘기업’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협약기간 종료 후 잔여금은 ‘기업’의 요청에 따라 전액 반환하거나, 또는 상호



협의하여 적절한 용도로 사용한다.

### 제 7 조 (사업의 관리 및 운영)

- ‘재단’은 ‘기업’이 본 협약에 따라 지급한 ‘기부금’을 ‘지정기부금’으로 처리하여 본 ‘사업’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- ‘재단’은 본 ‘사업’의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‘사업’을 관리 운영한다.
- ‘재단’은 ‘기업’이 지원한 ‘사업’이 중도에 더 이상의 진행이 불가할 시, 중단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잔존한 기부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반납하여야 한다.

### 제 8 조 (로고 사용)

‘사업’과 관련한 홍보물 및 자료 제작시 상호간의 승인을 통해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‘기업’과 ‘재단’은 규정된 로고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.

### 제 9 조 (협약의 해지)

- ‘기업’ 또는 ‘재단’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‘재단’이 설립허가 취소, 사업의 정지, 시설의 폐쇄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
  - ‘기업’ 또는 ‘재단’이 파산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상대방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본 협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
  - ‘기업’ 또는 ‘재단’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
- ‘기업’ 또는 ‘재단’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, 최고서의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‘기업’ 또는 ‘재단’이 과실로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
  - ‘기업’ 또는 ‘재단’이 특별한 이유 없이 ‘사업’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
-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‘재단’은 ‘기업’으로부터 이미 수령하였으나 미집행된 기부금에 대하여 ‘기업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

### 제 10 조 (신의성실)

‘기업’ 또는 ‘재단’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을 이행하며, 상대방의 명예와 이미지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해서는 아니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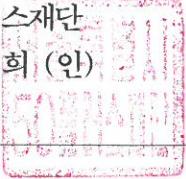


### 제 11 조 (기타)

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‘기업’과 ‘재단’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.

본 협약서는 권한 있는 대표자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며, 양사(기관)가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 양사(기관)는 본 협약의 증거로서 본 협약서를 2부를 작성하여 각 사(기관)가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5월 3일

|  |  |
|--|--|
| <p>‘기업’ 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67<br/>삼성카드 주식회사<br/>대표이사 원기찬 (인)<br/></p> | <p>‘재단’ :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<br/>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<br/>대표이사 이경희 (인)<br/></p> |
|--|--|

